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 석 기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전석기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6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공사기간의 산정을 예방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,

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,

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향조정(50명 이내 -> 50명

이상 70명 이내)하여 부실심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상위법인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한 점으로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,

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